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8. 12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성차별적 문구를 제거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사용 범위를 종전과 같이 명확히 하고자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8조제3항제3호 “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” 을 삭제한다.

제41조제2항 “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” 를 삭제하지 않는다.

제42조제4항제3호 “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” 을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“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” 을 삭제한다.

제41조제2항 “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” 를 삭제하지 않는다.

제42조제4항제3호 “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” 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8조(구성)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5.9.24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.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.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8조(구성) ③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<p><삭제>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8조(구성) ③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41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사용한다. <개정 2015.9.24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하는 사업 2. 제32조에 따른 범인 또는 단체가 수행 하는 사업 3.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.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활동 지원 5.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.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41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 <p><삭 제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.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41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42조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5.9.24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42조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 ④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<p><삭 제>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42조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 ④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